

◆ D-19 일용근로자의 노임을 계약기간중에 일방적으로  
하향조정할 수 있는가?

건설 현장의 일용근로자의 노임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만 원칙적으로 특별한 제한없이 새로운 근로조건의 설정이 가능함. 다만, 근로계약기간중에 노임 및 근로시간을 하향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있어야 되므로, 동의서를 받거나,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.